

TBT 뉴스레터



목 차

I. 통보문 월간동향

1월 TBT 통보문 동향	2
1월 TBT 통보문 주요내용	3-8

II. 해외 기술규제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구(SASO)/ 플러그에 장착된 가요성 코드로 배전 간선에 연결될 전기기기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일반 국가 요건	9-11
[유럽연합]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V를 개정하는 집행위 규정 초안	12-14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EA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SCI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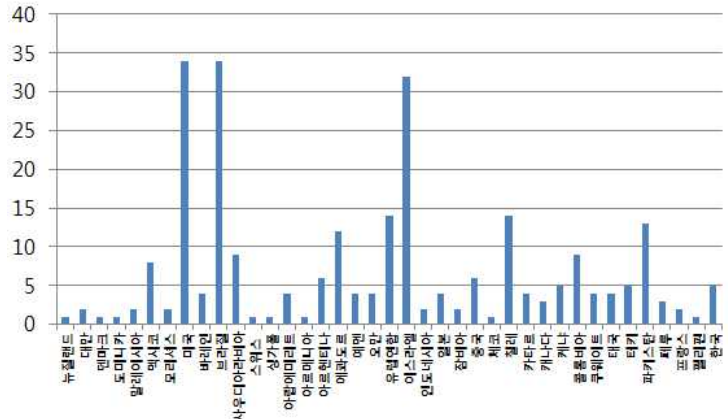
KCEMA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2016년
TBT뉴스레터
1월호

I . 통보문 월간동향

□ 국가별 TBT통보문 건수 : 33개국 264건 (부록, 정정, 보충문 제외 33개국 185건)

국가	건수	국가	건수
뉴질랜드	1	이스라엘	32
대만	2	인도네시아	2
덴마크	1	일본	4
도미니카	1	잠비아	2
말레이시아	2	중국	6
멕시코	8	체코	1
모리셔스	2	칠레	14
미국	34	카타르	4
바레인	4	캐나다	3
브라질	34	케냐	5
사우디아라비아	9	콜롬비아	9
스위스	1	쿠웨이트	4
싱가폴	1	태국	4
아랍에미리트	4	터키	5
아르메니아	1	파키스탄	13
아르헨티나	6	페루	3
에콰도르	12	프랑스	2
예멘	4	필리핀	1
오만	4	한국	5
유럽연합	14	합계	264



□ 주요 국가 통보 건수

국가	미국	EU	브라질	중국	일본	멕시코	합계
건수	34	14	34	6	4	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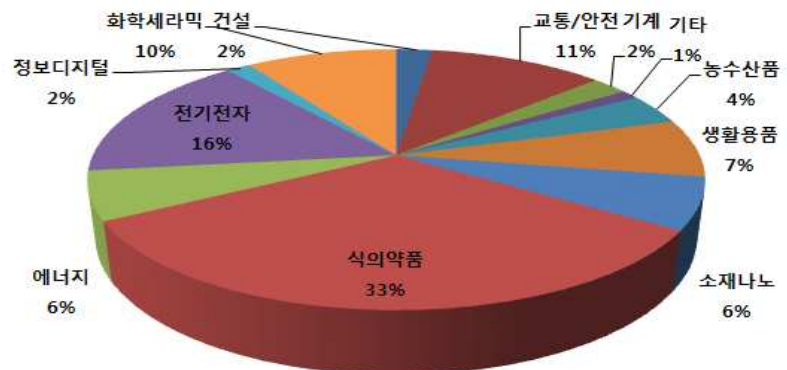
※ '유럽'의 통보 건수는 통보문 번호 EU와 EEC만 포함

□ 분야별 TBT통보문

분류	건수	누계
건설	6	6
교통/안전	29	3
기계	6	10
기타	3	19
농수산물	10	17
생활용품	19	87
소재나노	17	16
식의약품	87	42
에너지	16	4
전기전자	42	25
정보디지털	4	1
화학세라믹	25	24
합 계	264	264

※ 누계 : '16년 1월까지 누계

0 1월 대분류별 통보문 비율



I . 통보문 월간동향

1월 TBT통보문 주요내용 (1/1 ~ 1/31)

☐ 1월 첫째 주

[미국] 후방 충격 가드, 후방 충격 보호 (USA/1055)

◇ 담당기관 : 연방교통안전국(NHTSA), 운수성(DOT)

◇ 해당제품 : 자동차, 도로 수송 시스템 (ICS: 43.040)

◇ 규제 내용

미국은 2016년 1월 4일 G/TBT/N/USA/1055로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에 적용되는 후방 가드에 대한 미 연방자동차 안전 기준으로 캐나다 자동차 안전표준을 채택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는 규정을 통보했다.

☐ 규제 대상 품목

- 최대허용중량(GVWR)이 4,536 kg 또는 그 이상인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 본 규제안은 FMVSS No.223(후방 충격 가드)와 FMVSS No.224(후방 충격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기 두 표준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CMVSS No.223의 내용을 채택하여 개정하고자 함.

☐ 미국 표준과 캐나다 표준 비교

요건	미국	캐나다
적용 표준	FMVSS No.223/224	CMVSS No.223
적용 차량	트레일러	트레일러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시험 전 560 mm	에너지 흡수 시험 전후 560 mm
최후방으로부터의 거리 (Longitudinal distance from rear extremity)	305 mm	305 mm
측면 거리	100 mm	100 mm
P1 점하중	50 kN	50 kN
P2 점하중	50 kN	50 kN
P3 점하중	100 kN	-
가드의 분포 하중	-	350 kN

☐ (성능 요건) 본 규제안에 따라 기존 FMVSS No.223의 성능 요건을 CMVSS No.223의 요건으로 대체함.

I . 통보문 월간동향

1월 TBT통보문 주요내용 (1/1 ~ 1/31)

- 후면 충격 가드는 125 mm 이상 꺾이지 않고 350,000 N의 등분포가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20,000 J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함.
- 캐나다 표준에 따라 시험 후 그라운드 클리어런스가 560 mm를 넘지 않아야 함.
 - 이에 따라 그라운드 클리어런스의 용어 정의를 규제 원문에 추가할 예정임.
- 등분포가중 및 에너지 흡수 시험 후 부착된 후면 충격 가드가 차량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 (용어 정의 추가) 캐나다 표준의 'rear extremity' 용어 정의로 기존 용어 정의를 대체함.

◇ 채택 및 시행 예정일

- 채택예정일: 추후 예정
- 시행예정일: 추후 예정
- 해당 품목의 해당 국가 수출액
8708.10.0000 : 15,443천\$

□ 1월 둘째 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구(SASO)/대용량 에어컨 – 성능 요건 및 시험 방법. 본 표준은 SASO 2663:2014 "에어컨의 에너지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 요건" 의 범위에 해당하는 에어컨에 적용되지 않는다. (SAU/908)

◇ 담당기관 : 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관(SASO)

◇ 해당제품 : ICS: 23.120

◇ 규제 내용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1월 13일 G/TBT/N/SAU/908로 지정한 제품 범주의 대용량 에어컨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과 시험요건을 지정하였다.

□ 규제 대상 품목

- 대용량 에어컨(large capacity air-conditioner)으로 아래 제품 카테고리를 포함함.
 - 전기로 작동되는 에어컨
 - 콘덴싱 유닛
 - 칠러
 - 흡수 칠러

I . 통보문 월간동향

1월 TBT통보문 주요내용 (1/1 ~ 1/31)

- 시스템 에어컨(VRF 에어컨)
- 항온항습장치(close control air-conditioner)
- 단상 AC 220 V 또는 230 V의 에어컨 또는 삼상 380 V 또는 400 V, 60 Hz에서 작동되는 에어컨
- (규제 적용 예외 대상) SASO 2663 에어컨 최소성능기준 및 에너지 라벨링 규제 대상 품목은 본 표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최소성능기준) 규제 대상 품목은 냉각 방식과 용량에 따라 4.1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시험방법은 ANSI/AHRI 표준을 따름.
- (시험 온도) 제품 시험 시 T1(35 ℃)과 T3(46 ℃)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제품 등록 시 제출하도록 함.
- (마킹 요건) 에어컨 마킹은 영어 또는 아랍어로 기재하고 최소한 아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제조자명, 무역 마크
 - 원산국
 - 제조자 모델 또는 타입번호 및 시리얼 번호
 - 정격 주파수
 - 제품별 시험 시 활용되는 표준
- 60 Hz에서 작동되는 제품의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네임 플레이트를 제품에 장착하여 사용 전압을 표기하도록 함.
- 제품에 동봉되는 매뉴얼과 설명서는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서킷 다이어그램과 그림, 표는 영어로만 그리도록 함.
- (등록 절차) 제품은 SASO 강제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신청은 SASO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I . 통보문 월간동향

1월 TBT통보문 주요내용 (1/1 ~ 1/31)

◇ 채택 및 시행 예정일

- 채택예정일: 사우디 관보에 공표 된 날로부터 6개월
- 시행예정일: 사우디 관보에 공표 된 날로부터 6개월
- 해당 품목의 해당 국가 수출액
8415 : 135,162

□ 1월 셋째 주

[미국] 보청기 호환형 모바일 단말기 (USA/1064)

◇ 담당기관 : 연방통신위원회(FCC)

◇ 해당제품 : 모바일 단말기. 기존 통신사 회선 시스템 또는 디지털 회선 시스템용의 무선 송수화기가 달린 무선 전화기 및 통신 기기를 포함하는 유선 전화 또는 유선 전신 기기용 전자 기기; 영상전화 (HS: 8517). 음향 및 음향 (ICS: 17.140), 통신 단말기 (ICS: 33.050)

◇ 규제 내용

미국은 2016년 1월 21일 G/TBT/N/USA/1064로 보청기 호환용 모바일 단말기에 대한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되는 최종안을 통보하였다.

□ 규제 적용 범위 확대

- 동 규제안에 따라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핸드셋으로 정의되는 모든 제품에 보청기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함.
-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보장법(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의 섹션 710은 상호연결/비-상호연결 VoIP 서비스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모든 모바일 단말기가 보청기 호환성을 충족하도록 개정됨.
- 연방통신위원회는 현재 모바일 단말기 제조자들은 Wi-Fi 음성 통신, Vo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였을 때 보청기 호환용 모바일 단말기 범위 확대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음성기능

- 모바일 단말기의 음성 기능은 하드웨어에 내장된 음성 코덱 외에도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기도 함.
-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제품 구매 후 소비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통한 음성기능 제공 가능성을 제조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I . 통보문 월간동향

1월 TBT통보문 주요내용 (1/1 ~ 1/31)

- 그러나 동 규제안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 음성 기능 시험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제조자, 서비스 제공자, 제3자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간 협력을 통한 시험 파라미터 제공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전환기간을 부여할 예정임.

◇ 채택 및 시행 예정일

- 채택예정일: 2016년 2월 4일
- 시행예정일: 2016년 2월 4일
- 해당 품목의 해당 국가 수출액
8517 : 7,112,280

□ 1월 넷째 주

[유럽연합] 에어로졸 디스펜서의 최대 허용 압력에 관한 이사회 지침 75/324/EEC를 개정하고 그 라벨링 조항을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72/2008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위원회 지침 초안 (EU/334)

◇ 담당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해당제품 : 에어로졸 디스펜서

◇ 규제 내용

미국은 2016년 1월 8일 G/TBT/N/EU/334로 에어로졸 분무기(aerosol dispenser)의 최대허용압력을 개정하고, 라벨링 사항을 변경하는 규정안을 통보하였다.

□ 대상품목

- aerosol dispenser (철, 유리, 플라스틱 소재의 재사용 불가능한 용기에 액체, 가루, 반죽을 포함하거나/포함하지 않은 압축가스, 액화가스, 가압된 유용성 가스를 담고, 내용물이 액체 또는 고체 입자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한 것)
- (변경1) 분무기의 최대허용압력을 상향 조정
 - 분무기(aerosol dispenser)의 최대허용압력을 현행 13.2 bar에서 15 bar로 조정

가스 종류	50도에서 압력
20도에서 불연성이며 표준기압이 1013 bar인, 압축가스 또는 가압된 유용성 가스 (Compressed gases or gases dissolved under pressure not having a flammable range with air at 20 °C and a standard pressure of 1.013 bar)	15bar

I . 통보문 월간동향

1월 TBT통보문 주요내용 (1/1 ~ 1/31)

o (변경2)라벨링 규정 명확화

- No 1272/2008의 변경사항을 동 규정에 반영함.

- | |
|---|
| a. 불연성인 경우, 'Warning' 문구 및 No 1272/2008 첨부1 표 2.3.1의 카테고리 3에서 정한 표시를 할 것 |
| b. 가연성인 경우, 'Warning' 문구 및 No 1272/2008 첨부1 표 2.3.1의 카테고리 2에서 정한 표시를 할 것 |
| c. '가연성 매우 높음'인 경우, 'Danger' 문구 및 No 1272/2008 첨부1 표 2.3.1의 카테고리 1에서 정한 표시를 할 것 |
| d. 소비재인 경우, No 1272/2008 첨부4 표6.1, 파트1의 p102 주의사항을 표기할 것 |
| e.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인 작동상의 주의점을 명시할 것 |

◇ 채택 및 시행 예정일

- 채택예정일: 2016년 상반기
- 시행예정일: EU 관보 게재일자로부터 20일 후
- 해당 품목의 해당 국가 수출액
8424, 8486.20.91, 8486.30.8000 : 39,718천\$

Ⅱ. 해외기술규제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구(SASO)/ 플러그에 장착된 가요성 코드로 배전 간선에 연결될 전기기기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일반 국가 요건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구(SASO)/ 플러그에 장착된 가요성 코드로 배전 간선에 연결될 전기기기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일반 국가 요건]

◇ 규제 내용

2016년 1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단상기기에서 220V나 230V의 정격 전압 및 정격 전류가 13A 이하 또는 정격 출력이 2800와트인 플러그에 장착된 가요성(flexible)코드에 대한 일반 요건을 G/TBT/N/SAU/909로 통보하였다.

◇ 주요 요건 (개정시 추가 내용)

본 규제는 단상기기에서 220V나 230V의 정격 전압 및 정격 전류가 13A 이하 또는 정격 출력이 2800와트인 모든 가전 및 전기기기에 적용된다.

□ 범위

- 가정용 및 상업용 목적의 220V 또는 230V의 단상기기이며, 정격전압 13A 이하 또는 정격 출력 2800와트 이하인 플러그에 장착된 가요코드

□ 일반요구사항

-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가전제품 규격의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함.
- 기기가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 또는 사용 시 독성에 의한 위험이 없어야 함.
- 가전제품 및 충전부가 우발적인 접촉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되도록 묶어야 함.
- 가전제품은 정상 사용이 과도한 온도에 도달하지 않아야 함.
- 기기의 외부는 분류에 따라 습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함.
- 가전제품은 적절한 전기적 및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함.
- 가전제품은 비정상적이거나 부주의한 운영, 화재의 위험, 기계적 손상에 의한 안전 손상이 배제되어야 함.
- 적합성 요구사항의 적합 여부는 관련 제품 규격에 따라 시험함.

□ 등급

- 가전제품은 다음 중 하나의 클래스여야 함.
class 0, class 0I, class I, class II, class III.

□ 마킹 및 지침

-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마킹 해야 함.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를 볼트로 표시

II. 해외기술규제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구(SASO)/ 플러그에 장착된 가요성 코드로 배전 간선에 연결될 전기기기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일반 국가 요건

- 정격 주파수는 60Hz
 - 정격 입력 와트 또는 정격 전류 암페어
 - 제품명, 상표 또는 제조자 인식표 또는 책임 있는 벤더
 - 모델 또는 유형 레퍼런스
 - 원산지 국가(제품이 제조 또는 조립된 국가)
 - o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을 포함해야 하며, 아랍어와 영어 모두 제공되어야 함.
 - 최소한 마킹 정보 (5.1절)
 - 기기의 올바른 작동에 필요한 지침
 - 제품 규격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
 - o 또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함
 -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rsons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 o 심볼 : 5.3절에 명시된 심볼을 사용해야 하며, 특별 요구사항(5.3.2절)에 의거 사용해야 함.
- 정격
- o 정격전압
 - 115-230V : 제품에 사용되는 정격 전압의 정확한 범위를 명기한 것
 - 115/230V : 명기된 정확한 전압만 사용
 - 230V/400V : 230V 단상, 400V는 삼상으로 사용
 - o 정격 전류 : 13A를 넘지 않아야 함.
 - o 정격 출력 : 2800와트를 넘지 않아야 함.
 - o 정격주파수 : 정격 주파수는 60Hz임.
- 전원 연결을 위한 플러그 및 외부 가요코드
- o 플러그
 - G타입의 플러그, 직사각형 블레이드 플러그이며, 가전제품의 코드와 같이 제공되며, SASO 2203:2014에 부합되어야 함, 운영 전압은 230V 또는 220V 임(60Hz).

II. 해외기술규제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구(SASO)/ 플러그에 장착된 가요성 코드로 배전 간선에 연결될 전기기기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일반 국가 요건

- 플러그는 가요코드와 연결형 또는 비연결형으로 구성 할 수 있음.

○ 전원코드

- 클래스 III 가전제품 이외 가전제품용 전원코드는 SASO GSO IEC 60335-1:2012의 25.7 절에 언급된 유형에 따라야 함.
- 클래스 III 가전제품을 위한 전원코드는 절연되어야 함.
- 플러그 연결형 또는 비연결형 가요코드는 도체 영역을 가져야 하며, 넓이는 0.5mm²부터 1.5mm²이며, 기기의 정격 전류에 따라 다름. (표1 참조)

Table 1 - Nominal cross-sectional area of the conductor

Rated current of appliance A			Nominal cross-sectional area mm ²
>0,2	and	≤3	0,5 ^a
>3	and	≤6	0,75
>6	and	≤10	1,0
>10	and	≤16	1,5

^a These cords may only be used if their length does not exceed 2 m between the point where the cord or cord guard enters the appliance and the entry to the plug.

- 클래스 I 의 전원코드는 가전제품의 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녹색/황색 코어를 가지고 있음.

□ 에너지 효율

- 기기는 SASO 기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최소 성능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함.

◇ 분석결과

사우디에 수출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 및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가요 코드에 대한 일반 요건이며, 기술적인 요소는 IEC 60335-1:2012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술적인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규제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전파해야 한다. 본 규정은 사우디 관보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해당품목의 해당국가 수출액
84 ~ 85 : 3,259,486천\$

II. 해외기술규제 동향

[유럽연합]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V를 개정하는 집행위 규정 초안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V를 개정하는 집행위 규정 초안]

◇ 규제 내용

2016년 1월 4일 유럽연합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Rinse-off)화장품 제품에만 허용(0.01%)하는 개정 규정을 통보하였다.

◇ 주요 요건 (개정시 추가 내용)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무색의 흡습성을 가진 물질로 낮은 농도에서 향균 기능을 하는 살균 보존제로 사용되고 (샴푸, 염색약, 네일 에나멜, 애완견 샴푸, 물티슈 등에 사용) 본 규정안의 대상 품목은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물티슈를 포함한 화장품이다.

□ 개정 배경

-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The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에서는 2013년 12월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민감성 부분만)을 채택함.
- SCCS에서는 화장품에 포함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농도가(100ppm)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임상실험 데이터에 대해 피부에 흡수되도록 닦아내지 않는(leave-on) 목적의 화장품(물티슈 포함)의 경우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100ppm))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도하거나 유발하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결론을 내림.
- 메칠이소치아졸리논에 의한 알레르기의 발생 빈도의 증가 및 이 물질이 leave-on 제품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한 SCCS의 의견이 고려됨.

□ 주요 개정 내용

-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사용 기준을 제품 유형에 관계없이 0.01%(weight/weight, (100 ppm))로 적용하는 기준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Rinse-off product)에만 0.01%(weight/weight (100 ppm) 허용 하는 것으로 개정 (해당 규정 : Regulation (EC) No 1223/2009, Annex V (57번))

II. 해외기술규제 동향

[유럽연합]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V를 개정하는 집행위 규정 초안

- 개정 전 (57번)

Reference number	Substance identification				Conditions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Chemical name/INN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CAS number	EC number	Product type, Body part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Other	
a	b	c	d	e	f	g	h	i
56	3-Iodo-2-propynylbutylcarbamate	Iodopropynyl butylcarbamate	55406-53-6	259-627-5	(a) Rinse-off products (b) Leave-on products (c) Deodorants/antiperspirants	(a) 0,02 % (b) 0,01 % (c) 0,0075 %	Not to be used in oral and lip products (a) Not to be used in products for children under 3 years of age, except in bath products/shower gels and shampoo (b) Not to be used in body lotion and body cream ⁽¹³⁾ (b) and (c) Not to be used in products for children under 3 years of age	(a) Not to be used for children under 3 years of age ⁽¹¹⁾ (b) and (c) Not to be used for children under 3 years of age ⁽¹²⁾
57	2-Methyl-2H-isothiazol-3-one	Methylisothiazolinone	2682-20-4	220-239-6		0,01 %		

L 342/200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개정(안) : 제품 유형(Product type)에 Rinse-off 항목 추가

In Annex V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entry 57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Reference number	Substance Identification				Conditions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Chemical name/INN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CAS number	EC number	Product type, Body part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Other	
a	b	c	d	e	f	g	h	i
'57	2-Methyl-2H-isothiazol-3-one	Methylisothiazolinone ¹	2682-20-4	220-239-6	Rinse-off products	0,01 %'		

- 피부에 흡수되도록 닦아내지 않는 제품(물티슈 포함)에는 성분 사용금지
 - 피부에 흡수되도록 닦아내지 않는 제품(leave-on) 제품의 경우 현 기준치 0.01% (100ppm)가 알레르기를 유도하거나 유발 할 수 있어, 씻어내는 제품(Rinse-off)제품에만 허용하며, 피부에 흡수되도록 닦아내지 않는 제품에는 금지함.

Ⅱ. 해외기술규제 동향

[유럽연합]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V를 개정하는 집행위 규정 초안

◇ 분석결과

본 규제안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해 기존에는 제품 유형에 관계없이 0.01%(100ppm)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으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Rinse-off)에만 허용하고 피부 흡수되도록 남아 있는 제품(leave-on)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허용 기준을 기존 EU 기준과 동일하게 0.01%로 규정하고 있어 Rinse-off 제품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EU의 개정안은 기존 보다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 시행에 있어 관보 게재 후 20일 이후 시행이 되며,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제품 전환 시기를 부여하고 있으나 채택시기가 2016년 상반기 중에 채택이 될 예정이므로 해당 제품 수출 기업에 규제를 전파해야 한다.

해당품목의 해당국가 수출액
33 : 55,570천\$

TBT중앙사무국 소개

Korea WTO TBT Portal



KNOWTBT
Korean Network On World TBT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은 WTO TBT, FTA TBT 협정이행 모니터링, 기술규제 포탈시스템을 통한 해외기술규제 one-stop 서비스 제공, TBT 관련 교류 협력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무역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전화번호 : 02) 509-7258~61

E-mail : tbt@korea.kr

홈페이지 : www.knowTBT.kr